

백영화 선임연구위원

요 약

최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해당 법안에 의하면 소비자의 요청 시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게 되며,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는 보험회사가 부담함. 향후에는 세부사항 규정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 및 운영 방안 협의를 위한 의료·보험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작업이 진행될 예정임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제21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관련하여 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¹⁾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2023. 6. 15), 법제사법위원회(2023. 9. 21), 국회 전체회의(2023. 9. 13, 2023. 9. 21)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2023. 10. 6)

○ 해당 법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요양기관²⁾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전송 대상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요양기관이 전송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는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음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함

1) 전재수의원안(의안번호 제2102141호), 고용진의원안(의안번호 제2104447호), 김병욱의원안(의안번호 제2109414호), 정청래의원안(의안번호 제2109937호), 윤창현의원안(의안번호 제2102552호), 배진교의원안(의안번호 제2115534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요양기관을 말하며, 이에는 의료기관, 약국,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포함됨

- 보험회사(위탁 시에는 전송대행기관 포함)는 요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그 밖에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하는 것이 금지됨
 - 이의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함

○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³⁾부터 시행하되, 의원급 의료기관⁴⁾과 약국에 대해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청구 전산화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임
- 금융위원회는 향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하위 법령 개정, 의료·보험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표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p>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p> <p>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3) 2024년 10월로 예상됨(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10. 6), “앞으로는 병원 진료 후 One-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4)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의료법 제3조 제2항):

- ①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 ②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 ③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표 1〉 계속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p> <p>① <u>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u>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u></p> <p>④ <u>보험회사(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송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요양기관 등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⑤ <u>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 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⑥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p>
<p>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4. ~ 7. (생략)</p>	<p>제202조(벌칙) -----</p> <p>1. ~ 3. (현행과 같음)</p> <p>3의2. 제102조의7 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 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p> <p>4. ~ 7. (현행과 같음)</p>